부 의 안 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의	안	번	ত	2024-03
의	안	좋	류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소	Ą	<u>}</u>	위	안전상임위원회
발	의 연	면 원	일	2024년 9월 21일
발	의	의	원	최아인 의원 등 5명
찬	성	의	원	최아인 의원 등 13명

고양시청소년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양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41,983대이다. 특히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1990년 0.25대에서 2019년 0.96대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중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를 기준으로 30년이 넘은 노후 1기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즉 30여 년 전에 지어진 주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양시 내 신규 택지개발등 인구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차량 보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주차난) 해결은 우리 시 교통 문제 타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주차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제31조의2'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 수혜 대상이 노인, 임산부에 한정되어 있어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교통약자 전반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요구된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자동차 등록 대수, 가구당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양시 내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주차장확보율이 116.9%로 10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관련 민원과 불법 주정차가 난립하는 현황에 대한 타개 점을 찾는 데 취지가 있다.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 대다수이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상을 위한 '교통약자 주차 배려' 정책은 다소 미비한 현황이다. 이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본 정책의 목적은 고양시 내 전반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 '쾌적한 생활 기반 형성', '교통약자 배려를 통한 동행 복지 실현'이라 할 수 있다.

3. 시업대상(수혜자)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든 고양시민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가. 한정적인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현행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운용하고 있다. 여러 조항 중에서 본 상임위는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자 등 이미 사회적·객관적으로 교통 약자로 인정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문구가 없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거동이 불편한 자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된다.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과 같은 교통약자 배려 정책은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황이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초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이른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규 제정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역시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임산부·여성우선·어르신 주차구역을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가족) 배려 주차구역과 같은 명칭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고양시 또한 기존의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를 더 늘려 주차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여전히 부족한 주차 공간

본 상임위에서 지난 5월 약 한 달간 고양시민 약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약 56.3%가 고양시 내 '주차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 점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물리적인 주차 공간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후곡·백마 학원가, 식당가 등 상업 밀집 지역, 원당 지구 등 노후화된 구역 등에서 주차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임으로써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절감된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했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별도첨부)으로써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확대 대상으로는 현행 어르신(65세이상 노인)과 임산부에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다. 조례 개정과 함께 실제 주차 현장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에게 지급되는 주차 표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가. 영유아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정의

- 1) 영유아: 만 6세 이하의 아이
- 2) 거동이 불편한 자: ① 신체적 제한(근골격계, 신경계 또는 기타 신체적 장애로 걷기, 앉기, 서기, 기본적 이동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 ② 보조기구 필요(휠체어,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사람) ③ 의료적 조건(만성 질환이나 기타 건강 상태로 인해 체력과 이동성이 크게 저하된 사람) → 기존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2 1항 개정안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법 제6조 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호의 주차장에는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혜 대상에게 지급할 주차 표지에 대한 제언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산부 배지와 유사하게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주차 표지는 기본적으 로 수혜 대상인 임산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픽토그램과 함께 고양시 심볼을 더하여, 고양시에서 지급·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공간) 개방〉

앞서 언급한 물리적인 '주차장, 주차구역'의 부족 문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해결할 방 안은 바로 대형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차장을 새로 짓는 문제는 확실하고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부지확보 문제와 더불어 예산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다 소 떨어진다고 본 상임위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상임위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유휴 공간을 일과시간 외(공휴일 포함)에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방 정책은 이미 서초구, 수원시, 부천시 등에서 학교 측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시 내에서도 저동고등학교 등 약 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관공서를 통해 미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홍보도 많이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이 다소 낮은 현황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적인 시설의 일과시간 외 남는 주차 공간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추가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상임위에서는 저동고등학교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 확장ㆍ홍보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체계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한다. 즉 기존 시행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 공유 대상 주차장 확대

가장 우선으로 무료 공유 대상 주차장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 후곡·백마 학원가, 밤리단길을 비롯한 여러 상업 밀집 지역, 원당 지구 등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주차난이 심각 한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약 5개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역을 확보해야 하 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해당 정 책에 참여할 학교를 더욱 늘리고, 구청·시청·행정복지센터·지역 도서관·복지관·청소년수 련관 등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일과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와 달리 관공서나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장 개방 정책을 시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이용자 접근성 강화

현재 고양시는 2021년부터 주차 공유제 사업을 시작하여 저동고, 율동초, 원당초, 가람초 등학교 주차 시설 5개교, 민간 주차 시설 1개소 등을 확보해 약 178면의 공유 주차장을 조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 현황이다. 실제로 율동초등학교에서는 총주차장 34면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은 10대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절감된다. 따라서 무료 개방 공유 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은 사전에 관공서를 통해 허가를 받는 배타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비원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무인 시스템의 경우 기계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개방된 주차장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용 가능 시간이 지 났음에도 출차를 하지 않는 경우, 무료 개방 주차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타 행위로 학교 및 공공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 차원 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 또는 해결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 ① 범칙금 부과
- ② 사용 제재
- ③ 주차 감독관 배치 혹은 무인 관리 시스템 설치 지원
- ④ 사용 시간 제한 등

정리하자면, ①무료 개방 주차장의 범위를 학교와 더불어 공공시설로 확대 ②사전 등록자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 강화 ③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6. 사업효과(기대효과)

- 교통약자가 주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편리한 주차장 사용 및 이동권 보장이 가 능하다.
- 대중교통 교통약자 배려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가용 이용 교통약자 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수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소요예산(사업비)

-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사용 대상자에게 지급할 주차 표지 신규 제작 및 인쇄·발급 비용
 - 인쇄 업체 선정 및 견적에 따라 상이함.
 - e.g. UV 저항성 비닐(방수) 재질, 오프셋 인쇄, 유광 또는 무광 코팅 기준 대량 인쇄 (1,000장 기준) 약 20만 원~40만 원
-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확대 설치 시 필요한 도색 비용 등
 - 주차구획 확대 규모에 따라 상이함.
 - e.g. 주차 한 칸 기준 재료비 약 1만 원, 인건비 약 5만~10만 원, 기타 비용 약 1~2만 원
- 학교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시, 주차 관리 요원 고용 비용 혹은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업체에 따라 상이함.
 - e.g. 물품 구입 및 설치비 : 차량번호 인식기, 무인 요금 계산기, 차량 검지기, LOOP COIL, 통신제어장치, 케노피, 광네트워크 장치, 전광판 등을 설치해야 함. (이미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의 경우 그대로 활용) → 설치 비용 약 5천만~1억 원 / 연간 유지보수 비용 약 3천만~4천5백만 원

8. 첨부자료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8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8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아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4-03 발의연월일: 2024. 9 21

발 의 의 원 : 최아인 의원 등 5명

찬 성 의 원 : 최아인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교통약자란 행동상의 부자유함으로 인하여 공공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모두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
- 그러나, 현행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2에 따르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의 수혜 대상이 노인, 임산부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교통약자의 개념이 국소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영유아(혹은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교통약자에 해당하는다른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조례 제31조의2를 일부 개정하여, 교통약자 배려 확대를 통한 주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자인 어르신, 임산부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 '거동이 불편한 자'를 추가하여 교통약자 복지 정책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함(안 제31조의2)
- □ 개정조례안 : 붙임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수반사항** : 예상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고양시 관련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산부"를 "임산부, 영유아(만 6세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동반한 자, 거동이 불편한 자(신체적 또는 의료적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아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 |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 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 획의 설치기준 등) ①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 차장에는 어르신(65세 이상 노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과 임산부가 우선하여 사용 --- 임산부, 영유아(만 6세 이 하는 주차구역(이하 "교통약자 하의 아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 에서 같다)를 동반한 자, 거동이 치하여야 한다. 불편한 자(신체적 또는 의료적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로 운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